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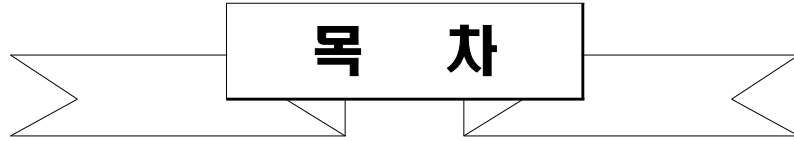
영 산 강 하 천 기 본 계 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1. 12.



국 토 교 통 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5
제3장 대상지역 설정	19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21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27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영산강 하천 기본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 항목 등의 결정내용 -

- 1.1 계획의 목적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근거
- 1.4 계획의 내용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시행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같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시행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의거하여 결정 내용을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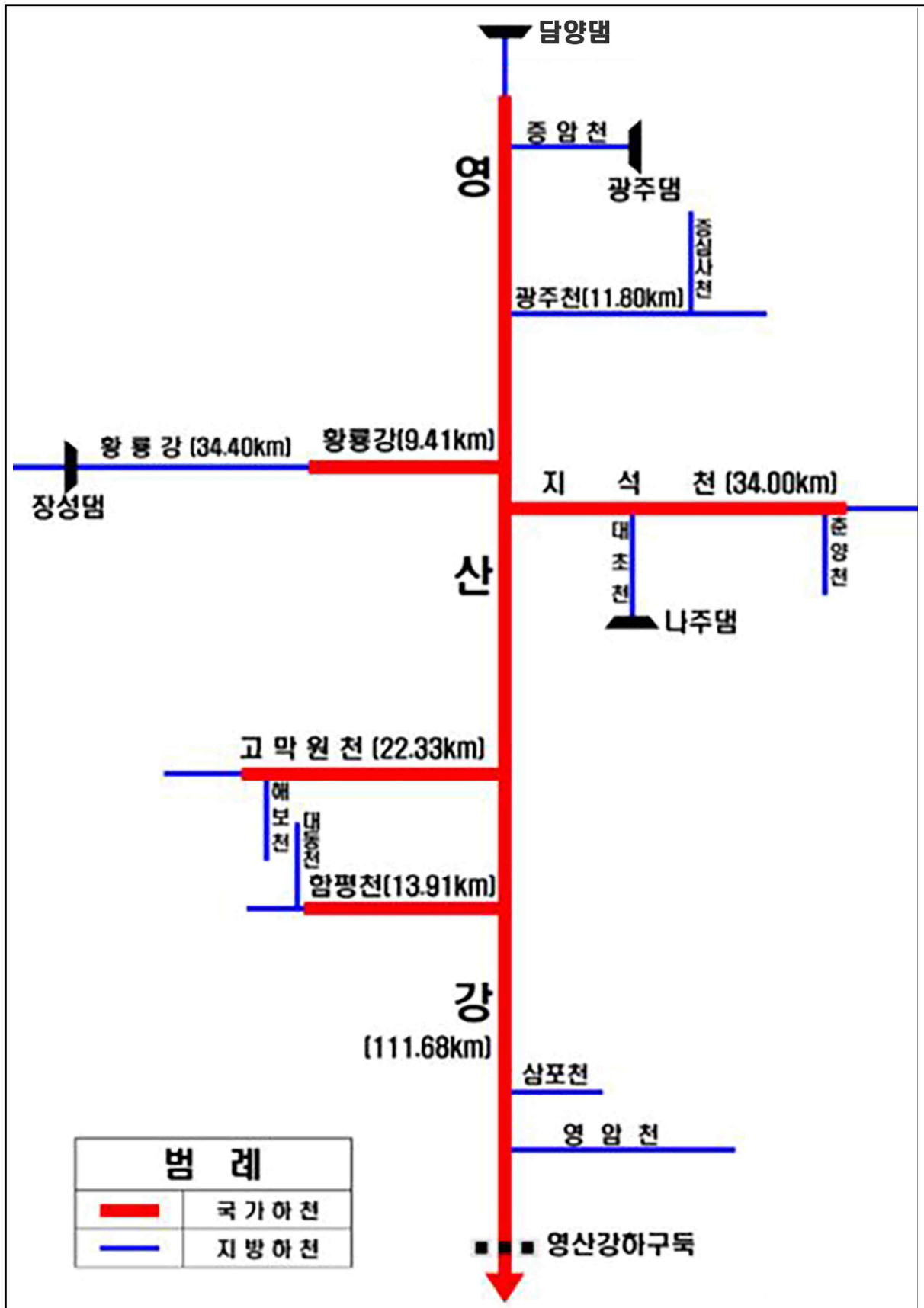
1.4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 치 : 영산강(국가하천)
- 규 모 : L=111.68km

〈표 1-2〉 계획하천의 범위

구분	하천명	등급	위 치		유로연장 (km)	과업연장 (km)
			기 점	종 점		
1	영산강	국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성면의 읍면계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영산강 하구둑 외곽선	129.50	111.68

(그림 1-1) 하천모식도



(그림 1-2) 위치도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영 산 강 하 천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항목 등의 결정내용 -


-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 심의위원 : 위원장 1인 포함 총 8인
- 심의기간 : 2021.11.15.~11.24.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구분	성명	소속	의견제출여부
1	위원장	손00	-
2	위원	정00	○
3	위원	양00	○
4	위원	이00	○
5	위원	정00	○
6	위원	김00	○
7	위원	이00	×
8	위원	최00	○



국립의 나라 영의로운 대한민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신 하천공시과장
(경유)
제목 '21년 제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일람

1. 하천계획과-6547(2021.10.18.)의 관련입니다.

2. 하천국(하천공시과)에서 요청한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 준비서 심의를 위한 제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불임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심의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가. 時 / 所: 2021.11.15.(월) ~ 11.24.(수) / 서면심의
나. 심의위원: 협의기관 및 관할지자체 소속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7명
다. 안 건: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심의

붙임 제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1부. 끝.

건설 안전국장

주무관 주무관 건설관리과장

발표자

시행 건설관리과-3104 (2021.11.15.) 접수 하천공시과-4066 (2021.11.15.)

우 54619 전라북도 익산시 혁신대로52길 27(남동동) / http://www.molit.go.kr/rocm

전화번호 063-850-9422 팩스번호 063-850-9460 / klt242@molit.go.kr / 비중개(5.6)

발자취가 심정이고 목자입니다

제1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영산강) 개최 계획

□ 개 요

- (時/所) 2021. 11. 15.(월) ~ 11. 24.(수) / 서면심의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서면심의) 제1항제4호에 따라 서면심의 추진
- (심의안건)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평가항목·범위 등 심의

□ 위원선정 및 운영계획

- (위원 선정)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협의기관 및 관할지자체 소속공무원, 환경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7명 선정

연번	분야	소속	성명	연번	분야	소속	성명
1	발주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정	5	민간전문가	KEI환경평가본부	김
2	환경	(주)동명기술공단	부	6	주민대표	월곡동 주민자치회	이
3	협의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7	시민단체	시민생활환경회의	최
4	관할지자체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				

- (안건 통지) 개최 계획과 심의요청서를 위한 요청부서에 통지(11.15.)
- (안건 심의) 심의위원은 안건에 대해 요청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11.24(수)까지 담당자 이메일(이기한 kh242@kcrea.kr)로 제출
- (심의 의견) 분야별 심의위원 의견을 취합하여 원안의결, 수정의결, 보완(재심의)로 구분하여 심의위원 과반수 의견으로 의결

□ 향후 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계획 통지(11.15.) → 심의요청서 평가(11.24.) → 자문의결서 취합(11.25.) → 결과통보(11.26.)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건번호/ 심의일시: 제2021-1호/ 2021. 11.15.(월)~11.24.(수)
- 심의의결

<p><input type="checkbox"/> 안건의결 : <input type="checkbox"/>원안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수정의결 / <input type="checkbox"/>보완(재심의)</p> <p>※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총괄의결	<p>○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치수 목적뿐만 아니라 수질 개선, 환경·생태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나친 인공화는 지양하고 본래의 자연생태계를 보전·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항목별의결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 <p>○ 대상지역은 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p>
	<p>2. 토지이용 구상안</p> <p>○ 교량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생태공간 확보, 비점오염시설 설치 등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함.</p>
	<p>3. 대안</p> <p>○ 수자원 및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피해를 저감 할 수 있어야 할 것임.</p>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p>○ 계획하천 인근 정온시설 등 대기질,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p> <p>○ 동·식물상 관련 평가 및 현황조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수목, 생태교란종, 보호종 등 하천의 식물상 환경현황의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제방, 고수부지, 저수로로 세분·검토 후 수목군 등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미흡 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예측 추가 요망. - 또한 3개 공간별(제방, 고수부지, 저수로) 영향예측을 토대로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홍수방어 치수기능 확보를 위한 「영산강 식생 유지관리」 방안 및 관리 구역도를 제시하여 영산강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생 유지관리 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요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건의결 : <input type="checkbox"/> 원안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의결 /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별 의 견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 절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6. 기타 사항	○ 각종 현황조사 자료에 대한 현행화 및 도면 등은 육안 판독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일

심의위원 : 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
 안건번호/ 심의일시: 제2021-1호/ 2021. 11.15.(월)~11.24.(수)
 심의의결

■ 안건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세의 자연하천 지형 및 하천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면서 하천의 이치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제3장 지역개발중 3.3 환경보전 목적의 지정현황」에서 단순히 행정구역별로 현황만 제시 하였는데 조사된 현황이 계획하천으로부터 어느정도 이격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영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항목별 의견	<p>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식물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 12. 22)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에 제시된 조사범위에 따라 설정 ◦p16 <표2.2-2>의 대상지역 범위에서 계획하천 반경 300m는 하천(선형)사업에서의 범위선정에 있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예 : 계획하천 경계로부터...). <p>2. 토지이용 구상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구역내 시설물 계획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하천의 토지이용현황과 시설물 현황, 하천기본계획상의 하천 공간관리 계획 및 시설물 계획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 구상안을 제시하여야 함. <p>3.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목적, 입지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된 대안의 선정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p>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기본계획의 특성에 따라 수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등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예측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질 및 동·식물상 등 평가항목에 관하여 본 계획 관련 기존 조사결과 및 인근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문헌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함 ◦「5.4 환경현황 조사」에서 동식물상의 경우 각 분류군별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예를 들어 생육이 왕성한 시기, 번식기, 산란기 등) <p>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람 및 설명회에 대하여 사전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적인 영향 및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p>6. 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수해예방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심의위원 : 양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1-1호/ 2021. 11.15.(월)~11.24.(수)
- 심의의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건의결 : <input type="checkbox"/> 원안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의결 /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2. 토지이용 구상안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3. 대안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6. 기타 사항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심의위원 : 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국가하천 영산강(L=111.68km) 본류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 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상위·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해당하천에 대하여 과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 제시
 - ※ 도면에 기수립구간 연장 및 수립시기, 계획빈도 등 제시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최근 10년간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급회 계획의 적정성 및 필요성 수립·제시

2. 대안 및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기본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 치수안전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설정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계획상 지구[보전(특별, 일반, 완충), 복원, 친수(저점, 근린)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근거(사진 도면 등 포함)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지구지정 현황과 금회 계획을 비교하고,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은 구체적인 사유 제시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대안 선정 시 하도정비 계획을 포함한 바,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대안 검토·제시

3.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저질 조사는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상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
-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상의 현지·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각 분류군별 적정한 시기(활동이 왕성한 시기 등)에 실시하고,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 ※ 동·식물상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정량·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첨부)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지점·구역·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 연계하여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 친화적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근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공원, 법정보호종 서식지, 습지보호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과 계획하천과의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계획 수립·시행 시 이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계획구간에 보호지역이 포함되거나 인접한 경우, 해당 지역을 도면에 확대하여 제시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로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영향예측 및 걱정 저감방안을 강구·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다양한 매체·경로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

5. 기 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2021. 11.

심의위원 이

붙임4 심의 의결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건번호/ 심의일시: 제2021-1호/ 2021. 11.15.(월)~11.24.(수)
- 심의의결

안건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판 의 결		
항 목 별 의 결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3. 대안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없음
	6. 기타 사항	의견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1 월 22일

심의위원 : 7/22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붙임4

심의 의결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심의일시: 제2021-1호/ 2021. 11.15.(월)~11.24.(수)
- 심의의결

<input type="checkbox"/> 안건의결 : <input type="checkbox"/> 원안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정의결 /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및 영암군에 위치하는 국가하천 영산강(L=111.68km)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계획수립 시 치수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하천이 갖는 자연성 및 환경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서 작성 시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 등을 이용하여 상세히 수록하여야 하며, 구간별 개수 및 시설물 계획에 대해 필요성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불필요한 횡적구조물(보·낙차공)에 대해서는 하천 건강성 및 수생태계 연속성을 복원할 수 있도록 철거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조사결과 및 환경현황을 구간별로 비교·평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홍수방어 대책의 수단·방법, 시설물의 입지 및 규모 등 세부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더불어 관련계획(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의 시설물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항목별의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td> <td>○ 적정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토지이용 구상안</td> <td>○ 평가준비서 내 구체적인 개수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서 작성 시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을 통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보진구간에 대</td> </tr> </table>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평가준비서 내 구체적인 개수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서 작성 시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을 통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보진구간에 대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평가준비서 내 구체적인 개수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평가서 작성 시 계획하천 구간별 계획내용을 표와 도면을 통하여 상세히 제시하고, 보진구간에 대				

견	3. 대안	<p>한 설정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비교를 위한 대안 평가 시, 계획의 장·단점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닌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도록 효과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계획의 유형별(치수, 이수, 환경, 공간관리 계획)로 각각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여야 함 ○ 또한 수단방법 대안의 경우 개수계획과 관련된 단순 공법(축제 및 보축 또는 하상굴착)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닌, 설계기준의 수준별로 효과를 비교 검토하여야 함 ○ 횡적시설물 및 호안설정 등 수단·방법에 관한 대안평가의 경우에도 하천현황을 고려하여 하천별 혹은 구간별 평가를 시행하고, 보전가치가 높은 구간에 대해 명확한 공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별 계획에 대해 환경, 생태계, 도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이치수 효과(장점) 및 항목별 환경영향(단점)을 구체적으로 평가 제시하여 최적의 계획을 도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계절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조사(현지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생태자연도1등급지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하천구간이 있을 경우 수변식생, 법정보호종 서식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보전 대책 수립, 보 및 낙차공이 있을 경우 시설의 기능적 현황 검토를 실시하고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필요성을 확인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 지점 명기 · 대규모 하중도 및 습지 존재 여부 평가 · 어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보 및 낙차공 현황사진 및 시설물 대비 어도설치 비율 제시 · 유속과 수량이 감소하는 곳에서의 생태적 기법에 대한 수단적 대안 적용가능 대상 시설물 개소수 분석, 제시 ○ 수환경의 보전(수질): 수질현황 및 연관된 수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천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수질보전 및 관리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또한 사업으로 인한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 하천설계빈도 상향조정이 있

	<p>을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함은 물론, 기수립 대비 홍수량 변동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함. 개수현황, 홍수이력,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등의 현황조사와 관련계획을 토대로 치수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함. 이때 설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하도 전 구간의 치수안정성을 확보하는 시설물 위주의 계획은 지양하여야 함. 제방, 횡적구조물 등 기존 시설물 현황과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 설계기준에 맞는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야 함</p> <p>○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현황은 해당 하천을 중심으로 재해위험지역 및 침수피해지역 등을 포함하여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간관리계획에 따른 계획하천 구간별 지구설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p> <p>○ 기상 및 대기질: 본 사업이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일 경우 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평가항목 제외 가능</p>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 사항	○ 의견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24 일

심의위원 : 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붙임4 심의 의결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평가준비서 심의
- 안건번호/ 심의일시: 제2021-1호/ 2021. 11.15.(월)~11.24.(수)
- 심의의결

안건의결 : **원안의결** / **수정의결**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원안대로 의결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영산강의 자연성회복을 기본 원칙에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영산강 수계 직·간접 영향권과 주요 항목별 계획 특성을 감안하여 대상지역이 설정 되었음.
	2. 토지이용 구상안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과 공사로 인한 수질 악화 대책 필요.
	3. 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 못한 집중 호우로부터 생명과 재산 보호 계획 수립 원칙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구간내에 습지보호지역 3곳, 야생생물 보호지역 14곳이 존재, 공사 소음, 진동으로 인한 동식물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평가 방법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개진 방법의 절차도 단순화.
	6. 기타 사항	영산강 수질개선의 목적, 방향과 일치하는 하천기본계획이 필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11 월 26 일

심의위원 : 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장 대상지역 설정

영 산 강 하 천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항목 등의 결정내용 -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제3장 대상지역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제시된 평가 항목별로 설정하였음.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계획하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 계획하천	
입지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육상·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경계 300m
		자연환경 자산	○ 하천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하천 정비시 하천지형 변화영향	○ 계획하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미치는 경관 변화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하천 정비로 인한 계획하천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수리·수문	○ 하천 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 하천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기질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 계획하천 반경 300m
		소음·진동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 계획하천 반경 300m
		토 양	○ 하천 정비시 토양오염 영향	○ 계획하천
	자원·에너지 순환의 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하천 정비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방안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input type="checkbox"/>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 하천의 토지이용 변화	○ 계획하천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영산강 하천 기본 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 항목 등의 결정내용 -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4.2 평가항목의 설정

4.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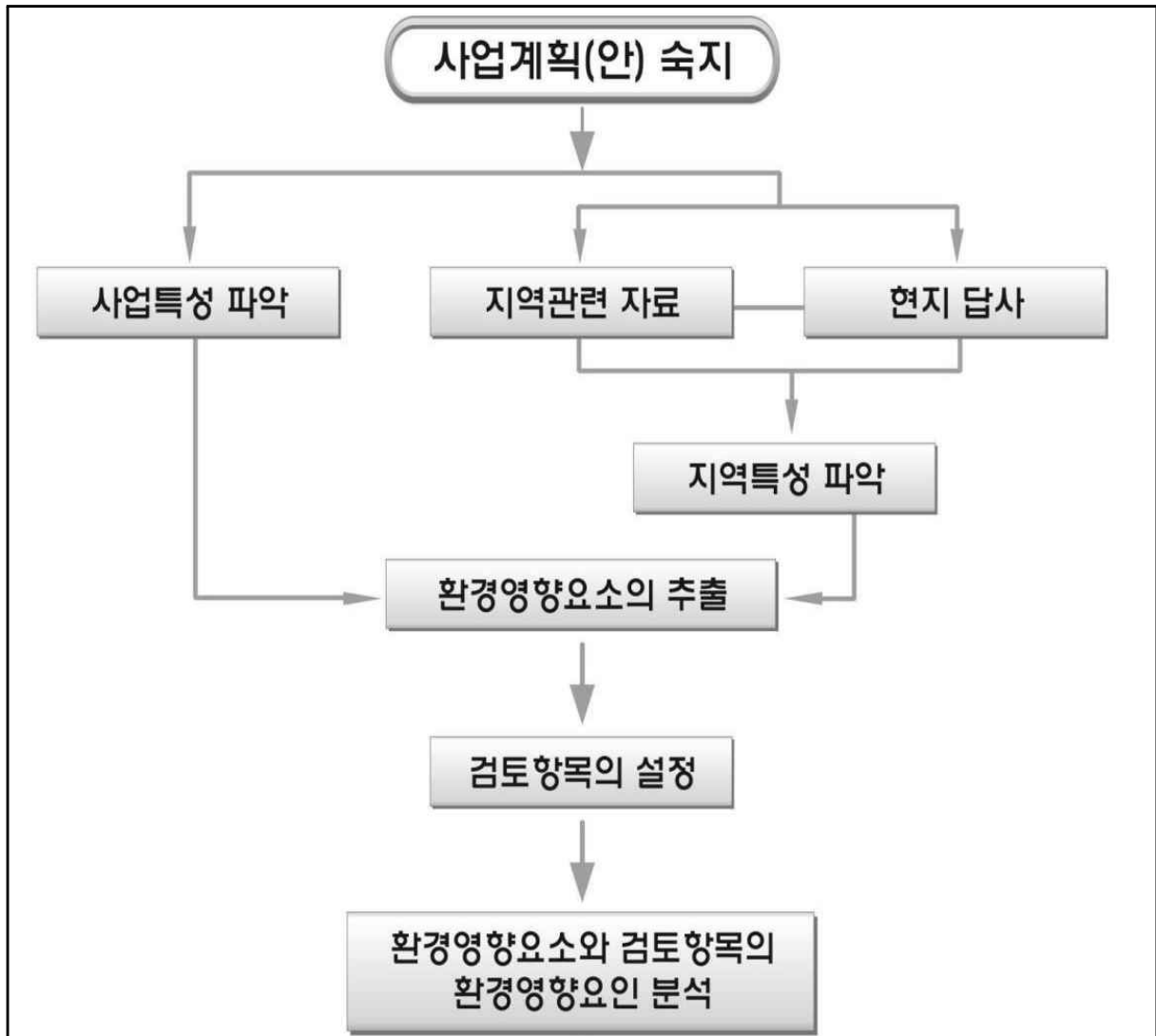
4.4 환경현황조사계획

제4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주요 행위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의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함.
-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시와 운영시 단계로 구분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경제환경의 편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절차를 이용하여 추출함.

(그림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흐름도



〈표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환경영향요소
공사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소음·진동, 폐유발생 ○ 지형의 변형, 절·성토 ○ 공사시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 ○ 수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자산 훼손 여부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수량 및 수질관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 하천 생태계 보호 ○ 수리·수문 변화

4.2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4-2〉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		설정사유	
1. 개발기본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 본 계획의 연계가 적정한지 검토 필요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방안에 따른 대안 평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등 조사 필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훼손에 대한 검토 필요 ○ 계획수립에 따른 주요 산림축(백두대간, 주요 정맥·지맥 등) 훼손에 대한 검토 필요 ○ 학술적·문학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사 필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려한 경관, 특색 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대한 검토 필요 ○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으로 영향이 있는지 검토 필요
		환경기준의 부합성	○ 계획지역 영향범위 내 대기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현황을 조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지역 영향범위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 및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검토 필요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편입용지 및 토지이용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 필요	

〈표 4-3〉 평가항목의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부 항목	선정결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평가	○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평가	○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	○ 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 락	제외
	경 관		평가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질 (지표·저질)	평가	○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리·수문	평가	○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파악
		해양환경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경미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평가
대기질			평가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물질 발생
악 취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토 양			평가	○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평가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	○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파악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	○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평가	○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제외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없음	
	산업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4.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2013」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0-289호」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음.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결과에 따라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4-4〉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평가항목		평가 범위 및 방법 선정		검토내용
		지역(범위)	방법	
자연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변화 예측
	자연환경 자산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사업계획 분석	○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
	지형·지질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공사계획평면도	○ 지형·지질 현황 파악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경 관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경관변화 예측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수 질	○ 계획하천	○ 현지 및 문헌조사	○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수리·수문	○ 하류수계	○ 수리·수문 해석	○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 ○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생활환경의 안정성	기 상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인접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대기질		○ 현지 및 문헌조사	○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예측
	토양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문헌조사 ○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소음·진동 예측식 - 거리감쇠 공식	○ 소음·진동 현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시설 영향 범위 예측 ○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하천 ○ 주변지역	○ 현지 및 문헌조사	○ 토지이용 현황 파악
			○ 사업계획 분석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4.4 환경현황조사계획

- 본 과업에 대한 환경현황 조사항목은 하천 수질 및 저질, 자연생태환경으로 계획함.
- 하천저질에 대한 현황조사는 과업기간 내 1회 조사하며, 하천 수질 및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현황은 과업기간 내 3회 조사를 계획함.

〈표 4-5〉 환경현황 조사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	횟수
환경질 측정	하천수질	○ 현지조사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Chl-a, Cd, As, CN, Hg, Pb, Cr ⁶⁺ , ABS 등 총 19개항목	15지점	3회
	하천저질	○ 현지조사 - 입도분포, 강열감량, 유화물, T-N, T-P, COD, Cd, Cu, As, Hg, Pb, Cr, Zn, Ni 등 총 14개 항목	28지점	1회
동·식물상 조사	육상 동·식물상	○ 현지조사 - 식물상과 식생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3회
	육수 동·식물상	○ 현지조사 - 육수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3회

주) 하천수질은 국가수질 측정망 총 13개 지점(담양, 우치, 광주1, 광주2, 광주2-1, 광산, 나주, 영산포, 죽산, 영산포-1, 함평, 무안1, 무안2)의 자료를 추가 활용할 계획임.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영 산 강 하 천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항목 등의 결정내용 -

5.1 의견수렴 경위

5.2 의견수렴 계획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5.1 의견수렴 경위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 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5.2 의견수렴 계획

5.2.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임.

5.2.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표 5-1〉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계획(안)

구 분	공람장소(안)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라남도 담양군, 나주시,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목포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남구, 광산구	10개 시·군·구

5.2.3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 ~ 중 략 ~ ~ ~</p> <p>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5.2.4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영산강유역 환경청),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5.2.5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할 것임.